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지주회사 설립 관련 자산·부채승계시
독립된 분할 및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함

지주회사 설립·운영에 필요한 현금, 사무실 등
‘지주회사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
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및 ‘자
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사전법규법인-1165, 2022.12.13

질 의

-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 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함께 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현 금, 사무실, 이관되는 인원에 관한 자산·부채 등을 승계하는 경우,
-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분할 요건 중 제46 조제2항제호 가목 및 나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 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요건 및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 신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지주회사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현금, 사무실, 미수금 등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 건 중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분리하 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및 같은 호 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이며, 분할신설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 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였는지 여부는 분 할신설법인의 사업내용, 자산·부채의 사용 현황, 운 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임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국외전출자
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118
조의 16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후에 양
도소득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증액분도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
되는 것임

국제조세제도과-30, 2023.01.19

질 의

- 거주자 A는 '17.12.31.현재 비상장법인(주) 의 지분 XX.XX%를 소유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 조의8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로,
• '18.xx.xx. 미국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및 소득세법 제118조의16에 따른 납부유예를 신청하 여 '18.xx.xx. 허가 받았음
•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신 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19.xx.xx. 수정신고 및 증액 된 세액에 대하여 추가 납부유예를 신청하였음

질 의

- 국외전출자가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소득 세법 제118조의16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후 수정신고로 인해 증가한 납부세액이 추 가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되는지

■ 회 신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118조의 16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후에 양도소득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증액분도 같은 법 제118조의 16에 따른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연속으로 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료등 5% 범위 내 증액 시, 소득령 155<20>(2)의 임대료등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재산-432, 2023.03.13

■ 질 의

-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로 임차인과 계약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임대차기간 개시일로 하고 직전 임대료등 대비 5% 이내로 증액하여 계약한 경우
- 소득령 155<20>(2), 소득령 167의3①(2)마목, 조특령 97의3③(1)에 따른 임대료등 증액제한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연속으로 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임대차계약 개시일로 하여 직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임대료등")의 5% 범위 내에서 증액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 전단, 같은 영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 본문,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3항제1호 전단의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 반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고시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주류 외의 리큐르주를 주류소매업자에게 반출할 수는 없는 것임

사전법규부가-959, 2023.03.27

■ 질 의

- 주류제조자가 리큐르주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에게 반출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위임받아 고시한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 반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고시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주류 외의 리큐르주를 주류소매업자에게 반출할 수는 없는 것임